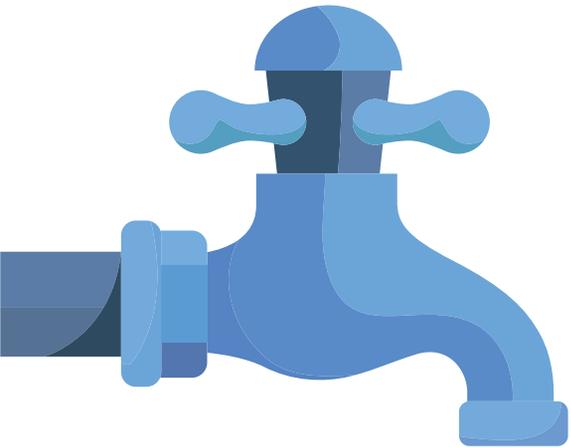


2015 ~ 2017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2018. 10.



01 ○○ 테니스장 공사는 예산낭비 02 ○○사 사찰 화장실 방치 03 LPG-가스 배관공사 예산낭비 04 ○○시 석면조사 예산낭비 05 ○○시 도로표지판 수정 예산낭비 06 버스정류장으로 안전펜스 설치 후 철거 07 ○○시 ○○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위락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09 지자체 외산브랜드 피아노 입찰 구매 10 일부 인쇄업체 인쇄비 과다 청구 11 선거관리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직원단체복 구입 13 이중국적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 필요 14 초등돌봄교실의 어이없는 예산낭비 1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료 농민단체 협의회 선심성 해외연수 17 전통시장 부르미사업 지원 부정 수령 18 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예산낭비 방지 19 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신고 20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 운영 21 ○○부 민간공모사업 지원금 부적절 집행 22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의 정부지원금 유용 23 ○○군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24 ○○○○군 예산낭비신고 25 개인 펜션 수영장에 마을회관 물 사용 예산낭비 26 불합리한 관사이용에 따른 예산낭비 27 성과 없는 6주간 해외창업교육 28 국유지 무단점유 예산낭비 29 ○○○○군 예산낭비 30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3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신고(5월)시 전자신고 공제 32 ○○○ 물류센터 예산낭비 33 ○○○군 인삼직판장 매입 후 철거 34 ○○○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자 여비 중복지원 35 K경찰서 행정우편료 예산낭비 36 한국 H기술원 직원을 찾은 해외출장 37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의 비효율성 38 지원근거 없는 해외출장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39 ○○대교 준공행사 3개 지자체 개별 추진은 낭비 40 책나리미 서비스 개별배송으로 예산낭비 41 행사위탁업체 통역비 과다신청에 따른 예산낭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8. 10.

제1장



공 사

01	○○ 테니스장 공사는 예산낭비	6
02	○○사 사찰 화장실 방치	7
03	LPG배관망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8
04	○○시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예산낭비	9
05	표기오류로 도로표지판 수정 예산낭비	10
06	버스정류장으로 안전펜스 설치 후 철거	11
07	공공건설현장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위장 하도급에 의한 예산낭비	12
08	개인 위락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13

제2장



물품구매·계약

09	지자체 외산브랜드 피아노 입찰 구매	16
10	일부 인쇄업체 인쇄비 과다 청구	17
11	선거관리위원회 기표대 재활용	18
12	○○군 시설관리공단 직원단체복 구입	19

제3장



복 지

13	이중국적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 필요	22
14	초등돌봄교실의 어이없는 예산낭비	24
15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산낭비	25

제4장



보조금 등 지원

16	농민단체 협의회 선심성 해외연수	28
17	전통시장 부르미사업 지원 부정 수령	29
18	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 관련 부당이익 반환 및 예산낭비 방지	30



19	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신고	31
20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 운영	32
21	○○부 민간공모사업 지원금 부적절 집행	34
22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의 정부지원금 유용	35
23	○○군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36

제5장



일반행정·기타

24	○○○○공사 예산낭비신고	38
25	개인 펜션 수영장에 마을회관 물 사용 예산낭비	39
26	불합리한 관사이용에 따른 예산낭비	40
27	성과 없는 6주간 해외창업교육	41
28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축소 부과	42
29	○○경찰서 이전 예산낭비	44
30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45
3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신고(5월)시 전자신고 공제	46
32	○○○ 물류지원단의 낭비와 예산 감질	47
33	○○군 인삼직판장 매입 후 철거	48
34	○○○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자 여비 중복지원	49
35	K경찰서 행정우편료 예산낭비	50
36	한국 H기술원 직원들 잦은 해외출장	51
37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의 비효율성	52
38	지원근거 없는 해외출장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53
39	○○대교 준공행사 3개 지자체 개별 추진은 낭비	54
40	책나르미 서비스 개별배송으로 예산낭비	55
41	행사위탁업체 통역비 과다신청에 따른 예산낭비	56

제6장



부 록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58
별지 서식	66



2018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hapter 01

공사

- 01 ○○ 테니스장 공사는 예산낭비
- 02 ○○사 사찰 화장실 방치
- 03 LPG배관망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 04 ○○시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예산낭비
- 05 표기오류로 도로표지판 수정 예산낭비
- 06 버스정류장으로 안전펜스 설치 후 철거
- 07 공공건설현장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위장 하도급에 의한 예산낭비
- 08 개인 위락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 테니스장 공사는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테니스장은 2년전 착공하여 1년전 완공 후 허가도 나지않고 하루사용하다 현재
잠정 폐쇄 중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현재 테니스장 위 ○○건설이 시공 중인 고가도로 건설(○○지방국토관리청 발주)이
미준공인 관계로 보아 이 부지 역시 국토관리청 몰래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자 현재
허가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테니스장 부지가 위치한 ○○교 공사는 이미 완공되고 다른 구간에 대한 일부
공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도 ○○호선 공사는 2012. 12. 31일까지 완공을
예상하여 1차로 테니스장 부지 조성공사(2012. 5. 11.~ 7. 9.)를 하고 2013. 7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계획으로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동 공사 일부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2013. 12월까지 1차 연장, 2014. 6월까지 2차 연장되어 현재 테니스장은
완공(2013. 6. 12.)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 무단시설로 잠정 폐쇄 중인 상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동 테니스장 부지 관련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테니스장 정상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동 건물은 ○○시 ○○구에서
테니스장 공사 착수 시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4억 5천만원의 재정이 1년간 미활용 상태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판단

*2014. 6월말 국도 ○○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테니스장 부지관리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2014. 7월에는 테니스장이 정상 운영될 예정



○○사 사찰 화장실 방치

예산낭비 신고내용

○○산 K공원 내에 ○○사라는 사찰이 있음. 이 사찰 아래는 2010년경 지은 화장실이 있는데, 건축 이래 현재까지 화장실을 한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고 폐쇄되어 있음

근처에 ○○산국립공원에서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화장실을 지어 방치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불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함이 아닌지 알고 싶음

처리결과

○○산 K공원 내에 위치한 ○○사는 급증한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지원 받아 전통양식의 목조 건축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였으나 등산객이 당초 예상보다 많고 물이 부족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임 주지가 임의로 구청에 사전통보 없이 화장실을 폐쇄하여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J구에서 화장실 신축 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식수와 화장실 사용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그 수량이 예상치 5톤보다 훨씬 적은 1.5톤에 불과하여 수세식 화장실 운영에 무리가 있음

향후 J구에서는 ○○사의 새로운 물탱크를 이용하여 해당 화장실의 수세식 이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수세식 변기를 물 없는 변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앞으로는 방문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후의 예상 문제점들을 사전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치

LPG배관망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예산낭비 신고내용

50여 가구 사는 조그만 동네에 가스배관 공사기간이 100여 일이 넘음. 직접 공사를 발주한 '○○LPG배관망사업단'에 요청하여 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공사도급계약서에는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2월 5일까지 60일이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음. 12월 5일이 공사종료일이라면 2017년 2월 25일에 각 가정에 가스공급이 시작될 때까지 80일이 지연된 것임

공사 지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과실책임은 발주처에 있는 시공사에 있는 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피할 수 없어 보임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으로 수차례 ○○LPG배관망사업단에 지체상금 부과를 요청했으나 이의 처리과정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음

처리결과

본 사업은 ○○○도 및 ○○군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LPG배관망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마을 LPG배관망 구축공사는 2016. 10. 6. 착공하여 2016. 12. 5. 준공하도록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동 사업단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서상 준공일로부터 80일이 경과한 2017. 2. 25. 준공계를 접수했음을 확인

본 공사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2조에 따르면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공사로부터 서면으로 요구되어 동 사업단의 계약기간 연장 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런 절차 없이 2017. 2. 25. 준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시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석면 교체 사업은 석면의 유해성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석면을 고착화하는 사업은 제거가 아니라 일시방패막이로 공사를 하는 것임. 이럴 거면 그 예산으로 일부분이라도 조금씩 철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처리결과

문의주신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시행 이후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시와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모두 본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및 경제성이 크지 않아서 사업 확대를 보류하고 석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석면해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참고적으로 ○○시는 2017년 예산에서 '석면고착화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석면 고착화 조치 후 석면 비산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시의 사업추진 동기인 사업기간과 비용에 있어서 검토 내용과 차이가 있고, 고착화 사업의 법적 품질기준, 인증제도, 손상시험기준, 하자에 대한 내용 및 보증기간 등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추진한 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석면 제거가 필요한 측면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여지가 있음



표기오류로 도로표지판 수정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회사명은 주식회사 O인터내셔널입니다. 사소하지만,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기에 OO인터내셔널정문에서 O인터내셔널 정문으로 바뀌달라 OO구청 건설도로과에 전화하여 오타 부분수정 요청하였고, 도로표지판에 O인터내셔널로 바뀌어 있었음

표지판 만드는데 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보내는 업체에 지급되는 돈도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사업자 등록이 이미 국가에 되어 있고, OO구에도 되어 있는데 왜 사업자에 나온 데로 안하고 임의로 하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로 생각됨

처리결과

처음 OO동부경찰서에서 본 건 표지판 표기를 잘못 작성하였고, 리스트를 송부 받은 OO시에서는 정확한 명칭을 검토하여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소홀히 하여 재설치되었으므로 OO시의 최초 설치비용은 예산낭비라고 판단

또한 도로 이정표나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등을 설치할 때 고유명칭 표기 시에는 명칭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도록 관련 기관에 주의 통보



버스정류장으로 안전펜스 설치 후 철거

예산낭비 신고내용

I시 S구 G동에 OO지구 8블럭 아파트 주변에 OO초등학교가 있어 LH에서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음. 얼마 뒤 시에서 OO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을 만들었으나 버스정류장을 어린이 안전펜스 뒤에 설치하여 버스를 타러 가려면 안전펜스를 넘어서 버스를 타야 하고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겐 불편을 초래하였고, 결국 둘 중 하나는 폐기를 하거나 재설치를 해야만 하는 일이 생김

결국 시와 LH의 사전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된 사례라 판단됨

처리결과

I광역시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시행된 당초 계획상 버스정류장은 이미 다른 장소에 있었고 신고 장소는 당초 계획에 없던 곳인데, 지역주민들의 노선 추가 요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거친 후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노선조정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개선명령이 통보되어 버스정류장 표시판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인 바, 현재 LH 가정보금자리 사업단에서 안전펜스 철거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로 조만간 안전펜스 일부를 절개하여 정비할 계획임

결론적으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아쉬운 점이나,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안전펜스 일부를 절개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공공건설현장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위장 하도급에 의한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도시 수변(00천, 00천) 생태환경 및 우수지 조성공사’와 관련 공공건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억 2,300만원 부당 편취

- ▶ 2013. 9. 15.부터 위 공공건설사업 현장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공무부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부장의 인건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여 공공사업의 부실안전관리 및 부당편취에 의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도시 수변(00천, 00천) 생태환경 및 우수지 조성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전담 안전관리자는 그 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 고용노동청 ○○지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사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A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외의 다른 직무에 해당하는 공무 등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의 도급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위 A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이와 관련 ○○지방 고용노동청 ○○지청은 2017. 12. 8. 시정명령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정산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음



개인 위락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예산낭비 신고내용

○○○도 ○○○군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놀이 시설에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공공부지도 공공시설도 아닌 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놀이시설로부터 놀이시설 안에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군 소유로 등기이전한 후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꾀수를 부림

특히 화장실은 놀이시설 내부에 신축되는데다 해당 놀이시설은 향후 입장료를 받고 놀이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장 내부에 공중화장실이라는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이나 되는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바 입장료 등을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시설 내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바람. 해당 예산은 ○○○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음

처리결과

(주)○○○○○ 농업회사법인이 추진 중인 ○○○테마파크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 소지가 있어, ○○○군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는 등 재검토

※ 추경예산에 4억 5천만원 전액 삭감





2018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hapter 02

물품구매·계약

- 09 지자체 외산브랜드 피아노 입찰 구매
- 10 일부 인쇄업체 인쇄비 과다 청구
- 11 선거관리위원회 기표대 재활용
- 12 ○○군 시설관리공단 직원단체복 구입



지자체 외산브랜드 피아노 입찰 구매

예산낭비 신고내용

독일산 ○-○○○라는 그랜드피아노 모델을 국가기관에서 구매함에 있어, 첫 번째로는 외자구매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법령의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정가 조사라는 의무를 해태한 것(요식적으로 독점 수입업체인 ○○○○악기사의 지배범위내의 영업점 간 견적을 받은 것), 세 번째로는 동등 이상품의 납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특정된 모델이 아니면 납품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처리결과

그랜드피아노(○-○○○모델)의 수입가는 2012년 기준 99,017유로(2013년 103,967유로)로 당시 환율(1,403원)에 따른 국내수입가격 산정시 2012년 기준 약 140백만원 정도이며, 항공운임, 보험료, 관세, 업체이윤 등을 감안하면 2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30백만원의 계약체결시 약 100백만원의 낭비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구매가격이 조달청의 구매가격(210백만원)보다 고가로 구매한 것은 예산낭비에 대한 적절한 신고사항으로 판단됨

추후 유사한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조달청에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로 회신하도록 통지

- (안전행정부) 타 지자체에서 외국산 피아노와 같은 수입물품 직접 구매시 수입 물자 원가 계산 등 다양한 가격 조사를 통한 계약 방법을 강구하거나 계약전문기관인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후 통보 요청
- (조달청) 향후 외국산 피아노와 같은 외자물품 구매 시 조달 수요기관에 규격 완화 등 경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일부 인쇄업체 인쇄비 과다 청구

예산낭비 신고내용

1. 조판(인쇄 공정에서 문자와 도판 등의 요소를 배치하고 지면을 구성하는 행위)
조판한 파일을 인쇄사에서 파일변환만 거쳐 인쇄를 하고 e-book을 제작하였는데(인쇄사에서 조금 수정을 했을진 모르지만) 조판비를 청구해서 예산낭비
2. 옻셋인쇄의 경우 컴퓨터에서 바로 인쇄판을 제작하는 CTP(필름 작업을 생략하고 직접 인쇄판을 출력)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필름출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인쇄사의 산출내역을 보면 필름출력비를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

처리결과

조판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조판비를 청구하거나 CTP 방식의 옻셋인쇄를 하고 있음에도 이전 방식의 필름제작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쇄비 과다 청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조달청에서 2011년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하여 표준화된 인쇄기준 요금이 없어 조판비 및 필름제작비 청구 여부 등에 따라 예산낭비 여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

경쟁 입찰 또는 견적서 비교를 통한 수의계약의 경우 현실적으로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실제 CTP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그 산출내역서에는 소부판비, 필름출력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 등 이전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실제로 예정가격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거래금액이나 인쇄사업자의 견적내역 뿐만 아니라 조판 여부 및 난이도, CTP 방식 도입 여부 등 인쇄기술의 향상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기표대 재활용

예산낭비 신고내용

선관위에서 기표대를 정리하는데 철제로 된 좋은 기표대를 모두 일회용으로 처리하여 버린다고 하였는데 접이식으로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다시 보관했다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새 것이었는데 모두 폐기처분한다길래 전국이 다 그렇게 하면 안 그래도 선거비용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은 꼭 수정 보완해야 할 것 같음

처리결과

기표대의 제작·설치·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살펴 보면, 기표대는 선거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선거물품이기 때문에 더 나은 투표환경을 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 선거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대부분 시·군·구 선관위가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다 보니 보관장소 확보가 어려우며, 종이로 제작하여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는 의견

또한 이번 ○○대 대선에서 제작한 기표대는 하단부가 플라스틱 및 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비용 등을 고려한 개선의견을 수렴해 다음 선거에서는 기표대 제작 시 하단부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음

기표대 재활용은 기표대 보관 장소의 확보 및 보관비용의 발생(현재 대형 기표대 보관비용은 제작비의 41%에 해당)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므로 1회 사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보관 장소·비용 등을 고려한 개선의견을 수렴해서 하단부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됨



시설관리공단 직원단체복 구입

예산낭비 신고내용

공단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한 당초 예산편성으로 인해 너무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번 건 역시 1인 200,000원의 피복비 구입을 163명으로 32,600,000원 요구한 공단에 ○○군에서 그 금액에 따른 예산을 배정했고 과도한 예산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예산심사 시 이번 건처럼 과도한 부분에 예산이 사용 되는지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을 지적함

정확한 예산의 산출과 명확한 예산금액을 배정하기 위해 공단의 여러 시설들의 운영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예산을 배정,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함

처리결과

○○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피복비 구입 건에 대해 2017. 11. 20일부터 24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한 내용과 같이 계획서와 절차 불일치, 간부 교환권 지급 등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상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

또한, 향후 피복비 관련 예산편성은 자제 및 철저를 기하고, 실무자 근무복 위주로 반영할 계획임





2018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hapter 03

복 지

- 13 이중국적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 필요
- 14 초등돌봄교실의 어이없는 예산낭비
- 15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산낭비



이중국적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 필요

예산낭비 신고내용

이중국적(호주에 거주 중인) 영유아 엄마들은 호주 정부로부터 한 달에 100만원에 가까운 육아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음

한국에서 받게 되는 육아수당은 많게는 20만원에서 10만원 선으로 해외에 현재 거주 중이라면 세금을 한국에 내는 것도 아니고, 이중국적인 영유아가 훗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며, 게다가 호주에서 매달 100만원에 가까운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외거주 영유아들에게 육아수당을 지불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됨

예산낭비 민원신고를 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형평성을 위해 해외거주자들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함

세계 최고의 복지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호주에서조차 3개월 이상 자국을 떠나 있는 거주자의 경우 육아수당의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그러하다고 알고 있음

처리결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8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하여, 부모 중 일방(부 또는 모)과 영유아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령(개월 수)에 따라 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음

이중국적 해외거주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에 대해 법률적 제한 근거 없이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앞으로 사회적 논의 및 국회 입법 과정 상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일정 기간 이상 해외거주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이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양육수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림

🔍 영유아보육법 개정 현황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6.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신설 2015.5.18.〉



초등돌봄교실의 어이없는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저는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 초등학교 교사임. 방과 후 돌봄 아이들은 현재 37명 정도이고 2개 반이 있으며, 1년 운영 예산은 4,600만원임. 이것도 정말 과한데 이번에 저녁 돌봄예산으로 2,700만원이 또 내려왔음. 저녁 돌봄이라기보다는 좀 늦게 퇴근하는 어머니가 있어 1명을 1시간 정도 더 기다려 줌. 그런데 그 아이 한 명을 위해 2,700만원이라는 돈이 6월 28일에 내려왔음

처리결과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경우 학생 수가 소수인 곳은 강사를 구인할 수 없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교실 당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대부분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우선보호 아동이 대상인데 반해 초등돌봄교실은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 주체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통합운영 등 효율화 대책을 강구토록 권장하였는바,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아동돌봄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왔음

※ 공동추진단 구성 : 교육부(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행정안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군 ○○읍에 거주하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2000cc 오펀더 승용차를 몰고 다님. 수급비를 받고 부업으로 일하고 2000cc 승용차까지 몰고 다닌다는 점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며 일반중소기업 근로자도 2000cc 중형차를 유지하기 힘이 드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중형차를 유지하는지 조사 바람(약 102만원씩 매달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있음)

처리결과

부정수급 의심자(A씨)에 대하여는 해당 보장기관(관할 시·군·구)에서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





2018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Chapter 04

보조금 등 지원

- 16 농민단체 협의회 선심성 해외연수
- 17 전통시장 부르미사업 지원 부정 수령
- 18 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
관련 부당이익 반환 및 예산낭비 방지
- 19 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신고
- 20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 운영
- 21 ○○부 민간공모사업 지원금 부적절 집행
- 22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의 정부지원금 유용
- 23 ○○군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농민단체 협의회 선심성 해외연수

예산낭비 신고내용

‘○○시 농민단체 협의회’라는 농·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단체(ex. 경영인연합회, 유기농, 사과발전, 양돈, 한우, 농민회 등 14개)의 해외여행을 중시시켜 주기 바람

매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 아래 후진국을 혈세로 가고 있는데 말이 선진지 견학 이지 시장이나 농장 잠깐 들리는 게 전부이고 남은 일정은 일반 관광임

작년에 간사람 올해도 또 가고 내년에도 가고 대체 ○○시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이해가 안 됨. 또 ○○시 ○○동에 위치한 농업인회관은 3층 건물이 반 이상이 비어있는데 별관이라고 또 지었음

처리결과

해외연수가 선진지 견학보다 일반 관광성이라는 신고에 대하여는 타당한 지적 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단체의 회장과 회원의 경우 작년과 올해 연이어 해외 연수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회원(2명)의 경우 자부담으로 실시되었고 회원 3명은 중복으로 확인되었음

향후 해외연수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대상자 선발 및 연수 내용의 충실도 등 해외연수 심사를 강화토록 하고, 농업인회관은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활용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해당 기관에 시정 조치



전통시장 부르미사업 지원 부정 수령

예산낭비 신고내용

○○○○회에서 택배사에 150~20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은 부르미사업으로 전통시장에 택배는 하루에 한두 건에 불과한데 이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사용함

처리결과

○○○○○○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전화조사, 현장방문 결과와 ○○청·공단·Y시의 관련 설명을 확인한 바, 콜센터 및 배송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축하고 인건비 지원대상인 콜센터 직원과 배송기사를 정상적으로 채용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배송 건수가 일 1~4회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해, 공단 등은 실적 향상 등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회에는 좀 더 사업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실시토록 지도할 예정임

실적 저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초기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는 예산 지원을 받는 전통시장의 배송 건수 등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 차등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



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예산낭비 방지

예산낭비 신고내용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였던 지원사업(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중 용자대상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대한 용자금 취급은행의 정상이자율이 용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정상 이자율로 징수(수취)하여야 하나,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이차보전율로 이자율을 청구하여 왔음

금융기관 등이 용자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기업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대출 이자율이 이차보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차보전율을 지원해주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예산낭비가 되고 취급은행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됨(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유사사업도 조사 필요)

처리결과

○○은행이 (주)○○제지에 1억원을 대출한데 대하여 이차보전을 5% 하였는데, 정상이율은 4.89%(2015.7.13~16.7.12)와 4.55%(2016.7.13~17.6.19)로서 정상 이율을 상회하여 이차보전을 해준 것으로 확인

따라서 동 기간 중 이차보전 금액은 9,849,314원(5%)인데 정상이율을 감안한 이자는 9,166,685원(4.89%, 4.55%)로서 682,628원이 과다 지급되었고, 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차기 이차보전 시 동 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계획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전 부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사례를 조사한 후 과다 지급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각 부처에 요청하였음



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신고

예산낭비 신고내용

(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산자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공작기계 개발을 해 왔는데, 오래 전부터 당사는 정부지원금을 당해 공작기계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목적과 다른 기계의 목형제작, 사무실 리모델링(거래처에서 부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하여 자금사용), 근무하지 않은 사원을 서류상으로 연구소 직원으로 입사시키고 급여를 지급(2016년 9월부터)하며, 또 지원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원이 서류상으로 연구소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 개발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현재 28억원 정도 지원금을 받아 오래 전에 개발한 기계가 완성도가 낮아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처리결과

해당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은 (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결과 (주)○○○○이 허위 채용을 통해 현금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음을 적발함. 이에 따라 한국○○○○은 2017. 11. 28.(화) 해당 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 불성실 중단 평가를 내렸고 이를 2017. 12. 13.(수) (주)○○○○에 통보

향후 기술개발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에서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범위 및 기간, 그리고 환수금액 및 제제부과금을 결정할 예정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 운영

예산낭비 신고내용

H희망신문 143호(2017. 12. 26.)에 의하면 “H군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총 9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함(행사실비보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2백만원, 경상사업보조로 ‘산불예방 순찰활동’ 7백만원으로 9백만원을 예산 책정한 것으로 나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2017. 12. 13.)에 의하면 H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 선심성 보조금 지원도 확인(H지자체는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산불조심과 자연보호 명목으로 2년간 총 1,8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이 동우회는 1,000만원 이상을 식대와 차량 임차료로 쓴 것이 확인됨)

● 건의사항

- 1)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지원근거로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내용 추가 검토 필요 - 퇴직공무원을 위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 해당 지자체 이외에도 국민위원회의 보도자료처럼 일부의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3) 산불예방활동을 하는 감시단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가. 제도개선 권고(47개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시행기관 대상)

- 행정동우회 관련 조례 중 ‘보조금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
- * 위 권고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행정동우회 관련 보조금 집행 현황 별도 조사 병행)

나. 예산 편성 유의사항 안내 등(전 지자체 통보)

- ‘행정 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수록하고, 향후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시 숙지할 것을 안내

다. 산불예방활동 감시 등 순찰예방활동이 여러 단체에서 진행할 경우, 보조금 등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동우회 등 퇴직공무원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통지



○○부 민간공모사업 지원금 부적절 집행

예산낭비 신고내용

○○○○○○의 탈북민 직원이 또 다른 탈북민에게 재단 예산 지원방법을 안내하여 탈북민 단체에 지원되도록 하였고, 예산을 지원받은 탈북민 단체는 허위 사업보고 및 과도한 봉사활동비와 회의비를 지급

특정 탈북민이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재임대하여 불법임대수입을 취득하여 부적절함

처리결과

가. ○○○○○○ 관련

- 2015년도 민간공모사업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 진행
-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 해당 탈북민은 2016. 12월 퇴거 완료(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민원 접수)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의 정부지원금 유용

예산낭비 신고내용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이 대리인을 내세워 특허 도용, 세금계산서 위조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유용한 내용 조사 필요

처리결과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원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3년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이 될 것임

또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거짓·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교부, 사용명세서의 허위 및 횡령·편취 등이 확인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중소기업청 훈령 제 370호)에 따라 조치



○○군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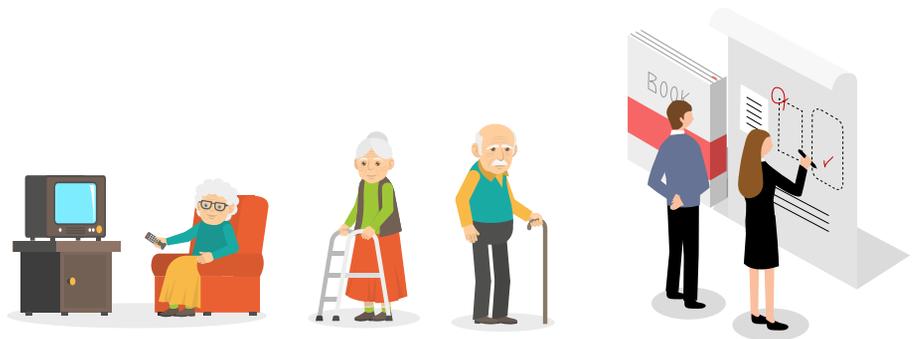
○○군은 2015년부터 ○○관내 400여개 경로당에 TV이용료를 중복지원하면서 한 해 4,3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현재 각 마을경로당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에서 TV이용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군은 군정홍보 방송인 ‘내고향 ○○TV’를 운영하면서 각 마을경로당에서 이를 시청하도록 하기 위해 군비로 2015년 2,100만원, 2016년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역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함

‘내고향 ○○TV’는 ○○군이 제작비를 지원하여 ○○TV인 올레KT 789번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데 각 마을경로당이 올레KT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내고향 ○○TV’를 시청할 수 없자 예산 중복지원으로 인해 현재 상당수 마을경로당에서는 기존에 시청하고 있던 유선 또는 위성 방송과 ○○군이 TV이용료를 지원한 올레KT의 IPTV를 중복 시청하는 상황에 있음

처리결과

○○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경로당에 ‘내 고향 ○○TV’ 방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었으며, 일부 경로당은 2개의 TV서비스(KT 올레TV, skylife skyTV, CMB ○○방송, iTV)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1개의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조치



Chapter 05

일반행정·기타

- 24 ○○○○공사 예산낭비신고
- 25 개인 펜션 수영장에 마을회관 물 사용 예산낭비
- 26 불합리한 관사이용에 따른 예산낭비
- 27 성과 없는 6주간 해외창업교육
- 28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축소 부과
- 29 ○○경찰서 이전 예산낭비
- 30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 3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신고(5월)시 전자신고 공제
- 32 ○○○ 물류지원단의 낭비와 예산 감질
- 33 ○○군 인삼직판장 매입 후 철거
- 34 ○○○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자 여비 중복지원
- 35 K경찰서 행정우편료 예산낭비
- 36 한국 H기술원 직원들 잦은 해외출장
- 37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의 비효율성
- 38 지원근거 없는 해외출장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 39 ○○대교 준공행사 3개 지자체 개별 추진은 낭비
- 40 책나르미 서비스 개별배송으로 예산낭비
- 41 행사위탁업체 통역비 과다신청에 따른 예산낭비



○○○○공사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 신고내용

‘2017년 외국인 투자 주간’ (2017. 11. 7. ~ 11. 9.) 장소 : ○○○○○

○○○○에서는 이 같은 행사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호텔 숙박, 숙식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외 현지 공무원들과 특수 관련인들이 비행기표 할인 받아서 한국 관광 공짜로 하는 개념인 것 같다고 생각됨

숙박, 숙식이 제공되니 여행처럼 생각하며 일정과는 무관하게 개인 활동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 부분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처리결과

○○○○공사에 따르면, 본 행사는 금년에 13회째로 2016년의 경우 참석한 방한 투자자는 16개국 289개사였으며, 674건에 28억 9천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금년에는 9. 25일 현재 119개사 신청 중), 초청인의 자격, 심사 등에 대해서는 해외무역관이 방한투자가 유치내역을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336개 신청사 중 47개사를 승인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공짜 숙박 및 뷔페 제공은 정규 프로그램상 오찬과 만찬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항공운임과 부대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는 설명임

○○○○공사 공무원들이 실적 및 쿼터를 메꾸려고 무리하게 투자자를 초청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어, 목표달성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투자가 발굴에 더욱 노력하며, 부적격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해외무역관에 주의를 환기시켰고(9. 22일), 방한투자가의 승인기준을 강화(구체적인 프로젝트 보유 여부 검토)하도록 해외무역관에 지시(9. 25일)한 바 있음



개인 펜션 수영장에 마을회관 물 사용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〇〇시 G군 G면 S4리 마을회관 앞 〇〇〇펜션에서 마을회관의 수도물을 이용해 펜션 수영장에 물을 채운다 함. 몇 년째 이용한다 함

처리결과

경로당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 회원회비, 후원금 등 마을자금으로 구성되며, 지하수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도 위의 재원으로 지불되고 있음

인근 펜션 수영장의 물을 좀 더 빨리 채우기 위해 경로당 회원인 인근 펜션 대표의 요청에 따라 경로당의 지하수를 2015년부터 몇 차례 호스를 이용해 공급해준 바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의 결과로 인근 펜션 수영장에 물을 공급한 만큼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해당 경로당(운영진)에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음을 확인받았고, 해당 군청에는 지원 대상인 경로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불합리한 관사이용에 따른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관사에 입주한 교장이 원래 소유한 자택은 관사가 소재한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바로 옆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는 세를 놓고 관사로 이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교장이 실제 소유한 자택에 대하여 사글세나 전세를 놓고 관사인 우리 아파트로 이전을 하였음이 예상되며 교장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고스란히 가계수입으로 편입될 게 뻔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음

처리결과

학교 관사의 경우 해당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관사 사용자의 주거지역 제한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나, 타당한 사유 없이 신고해 주신 사례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 이는 관사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해당 교육청 등에는 관사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거지 요건의 구체화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각 학교의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을 권고

또한, 관리비 등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은 위의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집행되어야 하며, 이에 어긋남이 있었는지 등은 해당 기관의 감사 등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성과 없는 6주간 해외창업교육

예산낭비 신고내용

해외창업 6주 교육사업에 참가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데 6주만에 창업에 성공한다?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도 성공하기에 너무나 힘든 것이 창업인데 이런 졸속사업을 주관하고 시행하고 있는 ○○부나 ○○○○○○재단은 왜 이런 성과도 없는 사업에 몇 억원이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선심성 해외창업 교육사업은 바로 중지시키고 재검토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

○○○○○○부에서는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기간 중에 베트남·캄보디아 등 사업대상 지역의 창업실적은 29건으로서, 투입된 예산 31억원 규모에 비해 다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창업실적 증가 등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부에서는 신고한 취지 및 실적 부진에 대한 국회 지적 등을 고려하여, 수요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이론 교육보다는 실전형 교육(코칭·컨설팅)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지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현지전문가를 평가위원에 추가하는 등 현지 경험·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아울러,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학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지체류경험의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축소 부과

예산낭비 신고내용

특정인이 관할기관의 허가없이 아래와 같이 국유지 구거를 무단점용하고, 그 토지에 무단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관할기관에서 변상금 등을 축소 부과

가. 국유지 구거 지번 : S시 Y면 G리 000번지

나. 축소부과 의심부분

1) 무단점용 면적

관할기관 부과 : 418㎡, 추정면적(네이버 지도) : 1,345.60 ㎡

2) 무단건축물 : 원두막, 콘크리트기둥, 슬레이트와 시멘트 구조물 2개

관할기관 부과 : 없음

신고인 의견 : 무단건축물에 대해 별도 부과 필요. 또한, 구거 인근 기존 주택(445번지)의 일부도 구거를 침범한 것으로 다음사이트 지도에서 나타남. 이 부분도 확인 필요

3) 무단시설 : 철망펜스, 철조망

관할기관 부과 : 없음, 신고인 의견 : 무단시설 별도 부과 필요

4) 무단점용, 무단건축, 무단시설에 대한 변상금 등 부과기간

관할기관 부과 : 2014년 민원발생으로 조사하였으나 2015년부터 소급하여 일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신고인 의견 : 무단점용 등에 대해 5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원이 2014년 8월경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4년부터 5년전까지 소급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처리결과

S시(관할기관)에서는 2014년 S시 Y면 G리 000번지 소재의 주택, 원두막, 시설물(철문, 펜스 등) 등이 해당 국유지를 무단 침범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해당 지역을 현황 측량한 결과, 주택 등 일부(418㎡)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3회)하고 변상금을 5년간 소급(2009.12.24~2014.12.23)하여 부과(2,027,130원)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1년간(2014.12.24.~2015.12.31.)의 변상금을 부과(506,690원)하였음

S시청은 정확한 무단점유 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S시 Y면 G리 445-2 및 동소 446)까지 측량을 의뢰하고,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만일 원상복구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임

따라서 관할기관인 S시에서는 해당 국유지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제반 조치를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아직 부과되지 않은 1년간의 변상금(2016.1.1~2016.12.31) 부과와 함께,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측량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 면적이 증가될 경우 누락된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등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통보



○○경찰서 이전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구 ○○동에 ○○경찰서가 이전해 오기로 했으나 아직 공사하지 않고 부지만 있으며 주변에 쓰레기더미도 많고 저녁이면 우범지대라고 함

현재 ○○경찰서는 ○○역으로 임시 이사했고 임대료만 2억이 넘는데 굳이 바로 공사 시작도 안 하는데 다른 곳에서 임시로 이사하면서 에어컨 실외기를 재설치 하는 등 여러 가지 낭비가 된다고 생각됨

처리결과

○○경찰서 신축사업은 1968년 건축되어 안전진단 결과 E등급(즉각 사용 금지, 보강 또는 개축 필요)을 받는 등 노후화의 문제가 발생한 구 ○○경찰서 청사를 당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재생 에너지 적용 등 새로운 기준과 여러 제반사항들을 반영하여 사업금액이 변동되고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연장되었음

○○경찰서는 2015. 11월에 ○○역 인근 지역으로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이전하였고 임대료는 260백만원 규모이나, 건물 주인이 경찰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보강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에어컨 등 부대시설을 수리·제공하며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치 않는 조건으로 임대계약되었음

월 임대료는 당시 ○○구 지역의 임대료 시세, 건물주의 부담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결과적으로 임시청사 이주시기(2015. 11월)와 구청사 철거시기(2017년초 예정)에 약 1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는 것은 관련 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다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이메일로 통지를 해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종이로 출력하여, 그것을 다시 등기로 발송하는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 개선이 안됨. 종이 문서로 업무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인지도 모르고 있음

오히려 전자문서로 요청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함. 1회에 종이와 잉크, 등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성인기준 하루 식대값이 나옴. 그 비용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 생각됨

처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일부 법령에서는 처리 결과 등의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가 해당 업무처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면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담당자가 신청인이 요청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 처리 방식에 따라 서면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자정부법 제3조는 관계 법령에서 종이문서로 통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전자서명법 제3조는 공인 전자서명의 서명날인 등 효과를 부여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등과 같이 신고인의 요청 형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로 요청한 경우는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신고인 등의 요청에 반해 종이문서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신고한 취지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 중앙부처에 함께 통보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신고(5월)시 전자신고 공제

예산낭비 신고내용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직장에 연말정산함으로서 소득신고가 종료되나,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없음에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다시 소득신고를 하여 전자신고 공제 2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을 악용한 공제사례가 있는 경우 환수 조치토록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현재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통상 타 소득이 있거나 해당 연말정산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어서 5월에 다시 확정신고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음. 신고내용처럼 단순히 신고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환급의 부당성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그와 별개로 해당 사례에 대하여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니터링하도록 조치

※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연말정산과 동일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방지되도록 조치(2017. 9. 22.개선 조치)



○○○ 물류지원단의 낭비와 예산 감질

예산낭비 신고내용

○○○물류지원단 ○○집중국에서 배차 운송장 등록은 ○○○물류지원단 소장 또는 사무장이 주로 등록하는데 운송장 등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한번 운송에 운송장 두 장을 등록하여 지급하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낭비함

예) A시 출발 B시 도착 11톤 운송한다면 11톤 운송장 한 장만 등록해 지급하여야 하지만 5톤 운송장 두 장을 등록하여 지급하는 등 여러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

처리결과

운송료 부당지급 방지 등을 위해 2017년 5월 15일 우편물류시스템을 개선 시행 하였음

다만, 시스템 개선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편집중국을 대상으로 점검 후 부당하게 운송료가 지급된 것은 회수 조치하고, 관련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군 인삼직판장 매입 후 철거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신문기사 요약(2017.5.16) 】

1. 62억 들여 매입한 건물 헐어 공터로
2. ○○엑스포 건물·부지 매입 논란 - 시민단체 “낭비, 상급기관 감사 청구할 것”
3. 대형 주차장 만든다더니 매입 직후 뒤바뀐 계획
4. 11억짜리 멀쩡한 건물 헐고 소규모 공터로 조성

처리결과

○○군에서 취득한 (구)○○타운 부지는 행사장 입구에 위치하여 ○○○○축제 및 ○○세계○○엑스포 개최를 위해 ○○군에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지만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구)○○타운 건물을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철거한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행자부 감사부서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자 여비 중복지원

예산낭비 신고내용

○○○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자의 예산 중복 지원

- 은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민간네트워크 초청 국내 행사에 대해 해외민간네트워크에게 항공료를 전액 지원
- 해외민간네트워크는 ○○○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반면, 지자체 테크노파크 주관 해외바이어 행사에도 참여하며 양측으로부터 항공료 등 경비를 중복 지원받고 있음

처리결과

해외민간네트워크 5개사가 ○○○ 주관 행사와 G테크노파크 주관 행사에 비슷한 시기에 참석하여 양측으로부터 항공료를 중복지원 받음

이와 관련하여 ○○○이 주관한 행사 참석 관련 기 지원한 항공료 50%를 해외민간네트워크 5개사로부터 환수 조치 추진

본 건에 대하여는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및 정보공유, 해외민간네트워크 중복 지원 금지 지침(징계) 등을 통해 정부 예산이 해외민간네트워크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K경찰서 행정우편료 예산 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운전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여 이미 수령했는데,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며 수령 안내 통지서를 받아 이에 따른 우편요금은 예산낭비

처리결과

K경찰서에서 2016년도에 일괄적으로 우편 통지한 대상자는 보관중인 면허증 대상자(면허증 갱신 후 미 방문자, 별점 등에 면허정지 종료자 등)로서, 기존에 수령해 간 면허증은 전산관리가 이루어져 우편 통지대상이 아니었으나, 면허증만 교부하고 전산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로 우편 통지가 된 것을 확인함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해당자에게만 '운전면허증 수령 안내 통지서'가 발송되도록 주의 조치



한국 H기술원 직원들 잦은 해외출장

예산낭비 신고내용

○○부 산하 H기술원에 자주 의문이 드는 부분이 기관은 영어도 못하는 직원들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1년에 1~2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빈도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음

1회 출장에 3~4명이 가면서 영어 하는 직원 1명 끼어 두고 회의록 작성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기관에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어서인지 몰라도 주어진 예산을 다 쓰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음

처리결과

H기술원은 업무 특성상 환경산업 해외진출, 국제환경네트워크 구축, 환경분야 국제표준협력 등 다양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외출장이 잦은 것은 사실이나, 해외출장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배정되지는 않음

다만, H기술원에서의 불필요한 해외출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 말까지는 담당 부서장의 결재 및 감사실장 협조만으로 국외출장이 가능했으나, 2016년 이후 복무관리 부서장의 협조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비 규정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럼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또 발생된 바, H기술원에 “국외출장 사전심사 제도”를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이 제도는 모든 국외출장 계획 시 출장 필요성, 출장자 구성의 적합성(업무 분장), 일정 및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출장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심사를 받은 후 심사결과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첨부하여 결재를 상신토록 하는 것임. 향후 H기술원에 대한 감사 시 임직원의 공무국외출장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토록 하고 문제점 발견 시 규정에 따라 조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신고내용

외국인이 거의 찾지 않는 곳에 해설사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각 해설사의 집마다 방문자, 문의내용 등의 일지를 비치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집은 폐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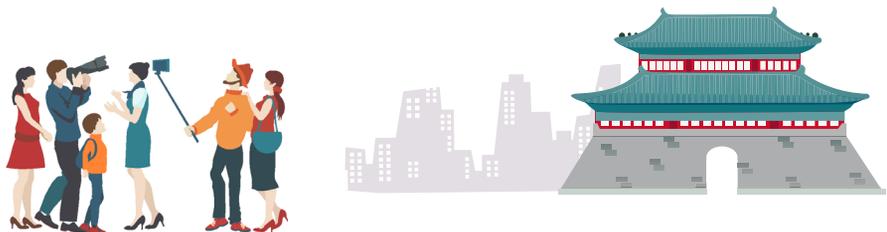
처리결과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최초로 수립되었음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각 관광안내소(해설사의 집)에는 해설사 활동일지를 비치·작성하고 있음

예로 든, ○○사의 경우 주중 1명, 주말 2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해설활동은 1일 1회에서 4회까지 하고 있고, 해설활동이 없거나 해설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에는 관광안내소(해설사의 집)에서 해설활동 준비 및 자료검색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용하고 있는 관광명소(○○서원-1일 1명 해설사, ○○사-1일 1명 해설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이와 대동소이함

하지만, 해설사 배치가 비효율적이고, 활동 실적이 저조하여 해설사 배치 필요성이 없는 장소에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안내



지원근거 없는 해외출장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시에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편성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처리결과

○○시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등에 대한 국외연수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국제화 여비가 아닌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지원 근거가 없는 배우자를 동반한 연수 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음을 확인

- ▶ 포상금으로 편성한 국외연수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지원근거가 없는 배우자를 동반한 국외연수는 배우자를 제외한 공무원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권고



○○대교 준공행사 3개 지자체 개별 추진은 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대교 준공행사를 ○○광역시청, 남구청, 동구청이 각각 별도로 진행. 예산의 경우 ○○시 : 1억원, 남구 : 1억 2천만원, 동구 1억 2천만원(예산낭비 논란 후 ○○대교 전망대 행사를 별건으로 하여 준공행사 8천만원, 전망대 행사 4천만원으로 분리)

각 기관이 3월 24일까지 3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현재까지(2015. 4. 15.) 행사 내용 미확정 하나의 준공행사를 3개 공공기관이 별도로 준비하면서 기본경비 및 개별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행정력 낭비요소 존재

처리결과

해당 3개 자치단체(○○시 본청, 남구, 동구)가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직접 위반한 사항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민 및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받는 행사를 강행하는 것도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3개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3개 자치단체가 추가 협의를 통해 남구와 동구가 추진 예정이던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 주관 행사에 상호 협력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



책나르미 서비스 개별배송으로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어르신들이 도서를 좋아하셔서 기존에 구비되어 있는 책만 돌려서 읽으시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책나르미 서비스를 알게 되어 두 분 어르신이 신청해서 다른 어르신들도 돌려 보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음

우체국 택배 발송은 가방에 깔끔하게 오는 것 같아 너무 좋지만 같은 주소로 오는데도 묶음 배송을 하지 않고 건건이 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됨

그럴 경우 반납을 하게 되면 가방 두 개를 또 돌려보내야 하는데 이것마저 두 건으로 택배비가 청구되며 원래 회원이면 세 권만 대여가 되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책나르미 서비스만큼은 택배비 예산 절감을 위해 대여 권수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됨

처리결과

책나르미 서비스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14일 동안, 최대 3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음

건의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같은 주소지에 대한 배송은 묶음배송으로 발송하여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대출 권수 증대는 다른 이용자의 도서 열람 기회 보장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낭비 신고자의 목적과 부합하는 순회문고 서비스 이용을 권장함



행사위탁업체 통역비 과다신청에 따른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이 이벤트는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하게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르바이트 현장을 담당하고 있던 ○○○씨께서 알바비를 지급하며 “어디가서 알바비 얼마 받았는지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혹시 국정감사에서 연락이 오거든 알바비는 하루에 3만엔씩 받았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한 사람당 만엔씩 떼먹는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음

행사 지원금 중에서 통역 아르바이트 고용비로 일인당 하루 3만엔을 지급 하겠다고 정부 예산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2만엔을 지급하여 행사 진행 측에서 1인당 하루 만엔, 알바에 참여한 사람이 총 7~8명이면이틀간 총 150만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취한다는 것임

처리결과

○○○진흥원에서 한국공동관 위탁대행사인 (주)○○○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그 당시의 통역원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한국공동관 위탁대행사인 (주)○○○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에 있어 경고와 함께 환수 조치를 취하였음

또한, 전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 점검을 진행할 예정



Chapter 06

부 록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대표자 선정 통지서(단체용)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
예산낭비신고 공문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9. 13.] [기획재정부훈령 제392호, 2018. 9. 1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국가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한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신, 방문,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수인 또는 단체가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 미지정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문서, 이메일, 유무선 등을 통하여 들어온 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등의 절차)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예산낭비신고 등은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제3장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제9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처리담당자의 의견요청, 실지조사 동행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예산성과금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신고건을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하여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자료보완 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유무선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 유무선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제15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주체의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의 신고센터장 또는 예산낭비신고 담당자는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7일 전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신고센터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신고센터에 제출된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기획재정부 신고센터의 구성원) ①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는 현장조사 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타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관리자로 둘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재정부 신고센터 구성원에 대한 보수)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파견된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절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민간전문위원 또는 현장조사 요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표창 및 포상금 지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낭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제21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표창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각 호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600만원
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500만원
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300만원
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200만원
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③ 포상금은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재정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2. 위원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④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심사하여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관한 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
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5.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5장 각 중앙관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23조(각 중앙관서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 제외)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센터장은 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20조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등

제26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기획재정부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낭비 신고정보 분석) ①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마다 예산낭비 신고정보를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분석하는 경우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제공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기획재정부는 예산낭비 방지 또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반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실태조사 또는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일부를 포털시스템 운영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할 경우 점검 등 결과보고서 작성 후 최초 개최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는 점검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검결과 등을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6개월 이내에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재검토키한) 기획재정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예산낭비대응사례금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례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지침 시행일 현재까지 사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도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포털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조항중 포털시스템에 관한 조항은 포털시스템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2013. 12. 10.〉

이 지침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14. 4. 14.〉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 등 일부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 2017. 8.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 2018.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표자 선정 통지서(다수인용)

신청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		이동전화	
	전자메일			
<p>201</p> <p style="text-align: right;">대표자: (서명 또는 인)</p>				
비고	1. 4인 이상 공동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제출할 경우 별지 연명부 제출			

대표자 선정 통지서(단체용)

단 체	단체명			
	주 소			
	연 락 처		FAX	
대 표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전자메일			
201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비교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

접수번호		제 목		
신고자	성명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주소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 . . .

기 관 명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 등 보완 요청

1. 귀하께서 우리 ○○부(처, 청, 기금)에 제출하신 (신청번호 예산낭비신고 등 제목)의 내용 중 붙임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하오니 201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회 이상 보완요청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를 종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보완할 사항 1부. 끝.

기 관 명 인

담당 서명 ○○과장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 - 일련번호(접수일자)

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

접수번호		신고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공동 <input type="checkbox"/> 단체
			성명	
구분	<input type="checkbox"/> 낭비신고, <input type="checkbox"/> 절감제안			
검토결과				
예산절감 수입증대 사항	규모	백만원		
	상세내역			
제도개선 추진사항				
비고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2015 ~ 2017)

발행처 | 기획재정부
디자인 및 제작 | (주)삼일기획

비매품

이 책의 저작권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무단 전재나 복제는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전 화 044-215-2114(대표)

2015 ~ 2017

예산낭비신고 사례집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기획재정부

01 ○○ 테니스장 공사는 예산낭비 02 ○○사 사찰 화장실 방치 03 LPG배관망사업 공사 지체상금 부과 04 ○○시 석면고착화 시범사업 예산낭비 05 표기오류로 도로표지판 수정 예산낭비 06 버스정류장으로 안전펜스 설치 후 철거 07 공공건설현장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위장 하도급에 의한 예산낭비 08 개인 위락시설 내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09 지자체 외산브랜드 피아노 입찰 구매 10 일부 인쇄업체 인쇄비 과다 청구 11 선거관리위원회 기표대 재활용 12 ○○군 시설관리공단 직원단체복 구입 13 이중국적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제한 필요 14 초등돌봄교실의 어이없는 예산낭비 15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예산낭비 16 농민단체 협의회 선심성 해외연수 17 전통시장 부르미사업 지원 부정 수령 18 정부 및 지자체의 정부지원사업(이차보전사업) 관련 부당이득 반환 및 예산낭비 방지 19 정부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신고 20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 운영 21 ○○부 민간공모사업 지원금 부적절 집행 22 창업맞춤형사업 선정기업의 정부지원금 유용 23 ○○군 경로당 TV이용료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24 ○○○○공사 예산낭비신고 25 개인 펜션 수영장에 마을회관 물 사용 예산낭비 26 불합리한 관사이용에 따른 예산낭비 27 성과 없는 6주간 해외창업교육 28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축소 부과 29 ○○경찰서 이전 예산낭비 30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으로 인한 예산낭비 3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신고(5월)시 전자신고 공제 32 ○○○ 물류지원단의 낭비와 예산 갑질 33 ○○군 인삼직판장 매입 후 철거 34 ○○○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자 여비 중복지원 35 K경찰서 행정우편료 예산낭비 36 한국 H기술원 직원들 잦은 해외출장 37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의 비효율성 38 지원근거 없는 해외출장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39 ○○대교 준공행사 3개 지자체 개별 추진은 낭비 40 책나르미 서비스 개별배송으로 예산낭비 41 행사위탁업체 통역비 과다신청에 따른 예산낭비